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2013. 12. 20(금)

산 업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3. 11. 01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
- 다. 회부일자 : 2013. 11. 04
- 라. 상정일자 : 2013. 12. 04(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구남회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권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함.)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2012.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광장) 현황

구분	개소	면적 (천㎡)	집행			미집행			
			개소	면적 (천㎡)	%	개소	면적 (천㎡)	%	
계	1,340	55,368	1,183	39,690	71.7	157	15,678	28.3	
공간 시설	공원	364	45,474	285	30,770	67.7	79	14,704	32.3
	녹지	920	9,466	848	8,594	90.7	72	872	9.3
	광장 (일반,미관)	56	428	50	326	76.1	6	102	23.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현황

구분	개소	면적(천㎡)	비고(관리청 의견)	
계	65	13,892		
공 원	소계	56	13,199	
	도시자연공원	3	5,737	존치 : 3
	근린공원	48	6,530	존치 : 41, 해제 : 7
	체육공원	1	22	존치 : 1
	역사공원	2	163	존치 : 2
	산림휴양공원	1	339	존치 : 1
	도시생태공원	1	408	존치 : 1
	녹지(완충녹지)	9	693	존치 : 2, 해제 : 7
광장(일반,미관)	-	-		

○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개소	1단계 (2013 ~ 2015년)	2단계 (2016년 이후)	비고
계	65			
공 원	56	27	56(27)	※ ( )는 1·2단계 중복
녹 지	9	2	9(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광장)은 총 157개소에 이르고 있고,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사업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7.1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효에 앞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집행시설 해소를 유도하고자하는 취지인 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금번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보상 및 개발 없이 장기간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여건 등으로 사실상 공원 및 녹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결정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경우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존치와 해제의 기준적용에 있어 인천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인지의 여부와, 존치 및 해제로 인한 시민생활에 끼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공원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해제 대상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공원 7개소와 녹지 7개소 대해 해제 또는 축소는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나,

-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시 재산상 이득과 손해를 보는 각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익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도 폐지 결정을 했다가 필요시 다시 묶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해제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또한 의회의 해제권고시 집행부에서는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야 하고,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및 답변 >

##### ○ 김영분 위원

- 고잔공원에 대해 부분해제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인지?

⇒ 관리청인 남동구의 의견이며, 별도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 고잔공원 주변은 고물상 등이 있어 환경이 열악한데 공원해제 보다는 존치가 필요함.

##### ○ 김정헌 위원

- 용유무의 개발로 훼손된 오성산과 을왕산의 절토부분은 훼손이 심해 필히 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함.

- 간선도로를 건설하면서 완충녹지를 조성할 경우 주변 토지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불필요한 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또는 부분해제가 필요함.

○ 이한구 위원

- 경인철도, 동수녹지는 전체 해제가 필요한가?

⇒ 군·구 요청사항으로 주변이 조성되어 도시계획결정 목적이 이미 달성된 부분으로 해제가 필요함. (환경녹지국장)

-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의견은 언제까지 줘야하나?

⇒ 9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되며, 해제권고 시 1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2년마다 정례회 시 보고하도록 규정됨.(환경녹지국장)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허인환·이한구·윤재상·김영분·김정현·안병배·조영홍 위원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권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의결함.)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권고 의견서 1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권고 의견서

## 1.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해제 권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보고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5개소 중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집행부 의견과 같이 51개소는 존치가 필요하고, 주변여건 변화로 기능상실 및 집행효과 등이 미미한 도시계획시설 14개소에 대하여 해제가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대해 존치 및 해제(부분해제)를 권고함.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및 자원 확보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해제권고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집행부 의견	권고사유	권고 내용
계		14건	A=1,443,790m <sup>2</sup>			
공원	소 계	7건	A=919,846m <sup>2</sup>			
"	소월미공원	중구 북성동1가 104번지	A=4,154m <sup>2</sup>	해제	동 필지는 대부분 국유 지로 향후 일몰제 적용 시점에서 재검토 필요	존치
"	고잔공원	남동구 고잔동 산301번지 일원	A=202,824m <sup>2</sup>	부분 해제	주변지역은 고물상· 야적장 등이 산재하여 공원조성이 시급함.	존치
"	관청공원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산8-1 일원	A=145,124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해제 시 난개발 우려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 혜의혹 및 타 소유지들 과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로 존치 필요	존치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집행부 의견	권고사유	권고 내용
공원	남산공원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산14-1 일원	A=462,044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해제 시 난개발 우려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 혜의혹 및 타 소유자들 과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로 존치 필요	존치
"	내가공원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09-2 일원	A=45,000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	존치
공원	대룡공원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산120-3 일원	A=33,000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	존치
"	온수공원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58-2 일원	A=27,700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	존치
녹지	소 계	7건	A=523,944m <sup>2</sup>			
"	대로 1-502 호선변	중구 운북동 일원	A=211,504m <sup>2</sup>	해제	기존도로까지 완충녹지 로 조성할 경우 심각한 재산권 침해 발생이 우 려되어 완충녹지 조성 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 하여 우선 해제 검토	부분 해제
"	대로 1-501 호선변	중구 중산동 일원	A=274,252m <sup>2</sup>	전면 재검토	"	부분 해제
"	경인 철도녹지	남동구 간석동 일원	A=3,955m <sup>2</sup>	해제	대체시설(방음벽) 설 치로 완충녹지 기능 상실되어 해제 필요	해제
"	동수녹지	부평구 부평동 634-1 일원	A=16,400m <sup>2</sup>	부분 해제	미집행 구간 중 예림원 부지공간에 지정된 경 관녹지에 대해 장애우 복지를 위해 일부 해제 필요	부분 해제
"	옥련녹지	연수구 옥련동 246-1 일원	A=16,400m <sup>2</sup>	해제	해제 시 난개발 우려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 혜의혹 및 타 소유자들 과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로 존치 필요	존치
	남산1 녹지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일원	A=4,720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주거지역과 준공업지 역과의 경계에 결정된 완충녹지로 기능유지 를 위해 존치 필요	존치

구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집행부 의견	권고사유	권고 내용
	남산2 녹지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일원	A=6,180m <sup>2</sup>	해제 또는 축소	도로변의 보존·관리 및 건축물의 난립 등 방지하기 위해 필요	존치